2025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 및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(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)에 따라 전주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**「2025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」**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, 3, 10,

전 주 시 장

- □ 사업기간 : 2025. 4. 8. ~ 2025. 6. 30. (예산 소진 시까지)
- □ 지원대상 : 전년도(2024년)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*
 - * 『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서 소상공인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**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 - **『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』제3조(소상공인의 범위 등)
 - ①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- 1.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: 10명 미만
 - 2. 제1호 외의 업종: 5명 미만
 - 공고일('25. 3. 10.) 기준 전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
 - ※ '25. 3. 10. 이전 폐업 및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 미충족 시 지원대상 제외 ex) '25. 3. 10. 폐업자는 신청 불가능, '25. 3. 11.이후 폐업자는 신청 가능
 - O 2025년 신규개업자, 국세청 매출자료 미확인자 제외
 - O 사업장 대표자 변경 시 지원 제외
 - ※ 단,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 시에는 지원

□ 제외업종	*
--------	---

- O 유흥주점·단란주점 등 향락업종,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
- 법무·회계 및 세무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, 병원·(한)약국·금융 등 전문업종
- O 택시업종(별도 수수료 지원사업 존재)
-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 매장(대규모 점포 명의로 카드수수료 부과되는 경우) ※ 사업장 단독 매출 증빙이 가능한 경우는 신청 가능
- O 매출액 확인 불가자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청 세금신고 미비 업체
- *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(재)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 붙임 참고

□ 지원내용 : 2024년도 카드 매출액의 0.5% 이내 지원(업체당 최대 30만원)

- ※ 예산의 범위 내 지급
- ※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2개 사업체까지 인정

□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5. 4. 8.(화) ~ 6. 30.(월) * 예산 소진 시까지
- O 전주시청 홈페이지(**통합신청지원**)를 통한 온라인 신청
- 첨부서류 : 사업자등록증 사본, 대표자 통장 사본
- □ 지급기간 : 제출서류 심사 후 순차적으로 계좌 일괄 지급(7월 ~ 12월)
- □ 문 의 처 : 전주시 민생사회적경제과(☎063-281-6682, 6684, 2373)
 - ※ 사업 시작 직후에는 문의 전화가 많아 통화연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제외업종 (재)보증 제한업종 [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 5]

○ 보증 제한업종

업 종		
(삭제 2010.11.30)		
• (삭제 2010.11.30)		
● 일반유흥 주점업 (신설 2010.11.30)		
● 무도유흥 주점업 (신설 2010.11.30)		
● 부동산업. 다만, 부동산관련 서비스업(682)은 제외(개정 2010.11.30)		
• 골프장 운영업		
• 무도장 운영업		
•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	
•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		
● 담배중개업(2009.1.1)		
● 골동품, 귀금속 중개업 (개정 2004.11.11)		
• 잎담배 도매업		
• 주류 도매업. 단, 주류중개업면허(나) 또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외		
(단서신설 2010.8.31)(개정 2018.8.21)		
• 담배 도매업 • 묘회계표 도메어 다. 이고묘회계표 도메어 케이		
● 모피제품 도매업.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		
(단서신설 2005.7.4)		
● 금융업● 보험 및 연금업		
 ▼ 모임 및 한급합 ●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. 다만 손해사정업(66201), 보험대리 및 중개업(66202)은 제외 		
● 급형 및 포함된된 시마드샵 다닌 는에 사용됩니다 및 경계합(002012)는 세기 ●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(신설 2009.1.1)		
●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		
판매(업)를 영위하는 경우(신설 2009.1.1)		
●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·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·건전문화에		
발 합성을 선생이의 현생되는 조각생의 상 출신선 합성, 기다 독년조산선선단화에 발 반하거나 사치·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(신설 2010.11.30)		

○ 재보증 제한업종

구분	한국표준산업분류	세부업종
	●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(33409) 중	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	● 장난감 및 취미, 오락용품 도매업(46463) 중	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	• 게임용구,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(47640) 중	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도박	 전자상가래 소매 중개업47911) 및 전자상가래 소매업47912) 중 	• 모박기계 및 시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도소매업
및	•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(76390) 중	•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게임	•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(5821) 중	• 도박 및 시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	•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(63999) 중	•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, 게임아바타중개업
관련	●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시업지원 서비스업(75999) 중	•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	●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(58122) 중	• 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	•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(91113)	•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	●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(96992)	• 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
건전	●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(47859) 중	• 성인용품 판매점
문화	●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(75330) 중	● 흥신소
	• 오락장 운영업(9122) 중	• 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관련	• 그외기타달리분류되지않은 개인 서비스업(98999) 중	•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투기 조장	• 경영 컨설팅업(71531) 중	 기획부동산업^{주)}

주) (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아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(330㎡, 660㎡ 등)로 분할한 후, 다단계판매와 텔레미케팅(전화권유 판매)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(시세의 3·5배)에 매도하는 업체

제외업종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

ㅠᄌ사이브리	업 종		
표준산업분류			
33409 중 4C10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		
<u>46102</u> 중	담배 중개업		
<u>46209</u> 중	입담배 도매업 		
46333	담배 도매업		
	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		
<u>46463</u>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		
<u>47640 중</u>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		
47811 중 47850 중	약국, 한약국		
47859 중 47911, 47912 중			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		
.= -			
47993 중	다만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		
	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		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		
56211	일반유홍주점업		
56212	무도유흥주점업		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		
<u>63999</u>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		
64	그용업		
65 66	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		
	금융 및 모임산인 시비스립 부동산업		
	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		
68	- 부동산관리업(6821)		
	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		
	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		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		
711, 712			
731	수의업		
73904 중	감정평가업		
75330 중	흥신소		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		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		
86	보건업		
	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		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		
91121	골프장 운영업		
9122 중 01240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		
91249 91291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	
3123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		
9612 중	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		
5	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		
	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		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		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		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 문		
/14 	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		
·			